

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1. 21

(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임영택

나. 제안사유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으로 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m³당 단가를 산정 징수코자 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기금지원 비율을 제외한 비율에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 m³당 단가를 산정 징수코자 함.(안 제12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 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,
- 단, 해당주민들에게는 부담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하수도사용료와 정화조분뇨수거료와의 비교분석 등 각종자료를 활용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코자 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 임 :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2조제2항중 “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”를 “요율에 의하여, 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기금지원 비율을 제외한 비율에 별표1의 ㎥당 단가를 산정 징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용료) ①(생략)</p> <p>②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<u>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우수또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12조(사용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- - <u>요율에 의하여, 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는 하수처리구역내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기금지원 비율을 제외한 비율에 별표1의 m'당 단가를 산정 징수하여야 한다.</u> 다만 - - - - 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1]

하수도사용요금표

(제12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수량 - m³, 금액 - 원)

구 분	종 별	사 용 요 율	
		사용구분(m ³ /월)	m ³ 당 단가(원)
가 정 용		0 ~ 10	80
		11 ~ 20	140
		21 ~ 30	160
		31 ~ 40	190
		41 ~ 50	210
		51 이상	270
업 무 용		0 ~ 20	180
		21 ~ 50	270
		51 ~ 100	300
		101 ~ 300	350
		301 이상	400
영 업 용		0 ~ 30	250
		31 ~ 50	270
		51 ~ 100	450
		101 이상	820
목 탕 용	1 종	0 ~ 200	190
		201 ~ 300	230
		301 ~ 500	380
		501 이상	410
	2 종	0 ~ 200	230
		201 ~ 300	330
		301 ~ 500	420
		501 이상	490

주)단일시설내에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지원하고 주된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